

반덤핑제도의 이해와 활용방안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 변 종 립)

WTO체제의 출범('95. 1)과 OECD가입('96. 1) 등으로 무역 자유화와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경제는 국경없는 거대경쟁(mega-competition)에 직면해 있는 반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중전의 정책수단(보조금 지원, 수입선다변화제도 등)은 갈수록 제약되거나 폐지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의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산업피해구제제도 특히, 반덤핑제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어 세계 각국은 오래 전부터 전담구제기관을 신설했거나 확충하는 등의 무역구제기능을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전담기관인 무역위원회는 1987년에 설립되었고 지난해까지 86건의 산업피해조사신청을 처리하였으며, 관련 근거법률인 관세법의 일부개정(2001. 1. 1)과 지난 2월 3일자로 공포된 최초의 종합 무역구제법인 “불공정무역 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시행(2001.

5. 4)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무역구제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필요한 반덤핑제 소절차와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반덤핑제도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이해를 돕고, 나아가 부당한 가격 차별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력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요

1. 개념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을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며,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 미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된다.

2. 유형

덤핑방지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GATT 제6조 및 WTO반덤핑협정,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GATT 제6조, 16조 및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 관세법 제57조 내지 62조)

< 산업피해구제제도 >

구분	덤핑방지관세	상 계 관 세	세이프가드조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무역 ○ 외국수출기업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무역 ○ 외국정부행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무역 ○ 수입국의 구조조정 촉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수입 사실 ○ 국내동종물품 생산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caus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지급 사실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수량 증가 ○ 국내동종 또는 직접경쟁 물품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 다른 요인에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의 중요원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방지관세 부과 ○ 보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계관세 부과 ○ 보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수량 제한, 관세율 인상 등 ○ 보상(또는 보복) 있음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는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주로 농림수산물품목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나 공산품도 일부 있다.(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 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8조)

II. 덤핑방지관세제도 절차

1. 조사신청

가. 신청인 자격

○ 국내생산자
신청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이상이어야 한다.

- 생산자 단체 :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
-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나. 신청요건

- 덤핑수입(dumped imports)이 있을 것
 - 덤핑수출국의 정상가격과 덤핑수출가격과의 차이(덤핑차액)
-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것
 -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국내산업의 확립지연
- 덤핑수입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일 것

다. 조사신청서 내용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조사신청서 접수

조사신청서는 비공개용 및 공개용 각 3부씩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신청서 접수후 조사개시검토에 필요한 자료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보완자료를 제출한다.

조사신청서에 영업상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자료에 “영업상 비밀자료”임을 표기하고 아울러 영업상 비밀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절차

가. 조사개시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후 2월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사항을 확정한다.(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기간, 조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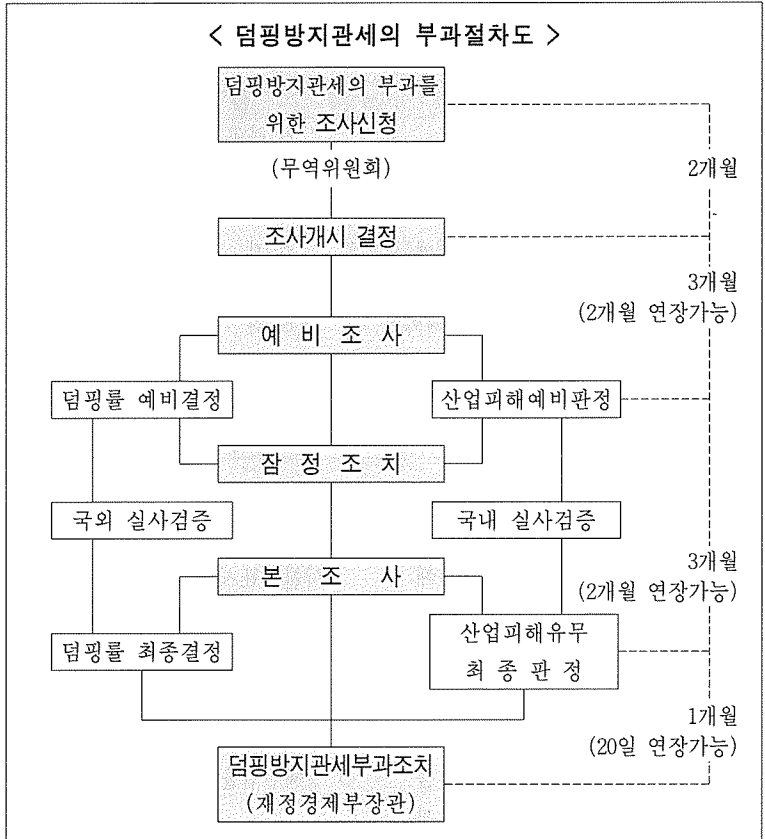
상품품의 공급국 및 공급자)

나. 예비조사

- 예비조사 기간
 예비조사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이내(필요시 2월 연장가능)에 완료한다.
- 질문서 조사
 외국수출자,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에게 각각 질문서를 송부한다.
- 이용가능한 자료의 수집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제출시에는 관세청(수입물량 및 금액 등), 기술표준원(품질 및 기능분석), 관계기관 및 KOTRA에 자료를 요청한다.

다. 본조사

- 본조사 기간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필요시 2월 연장가능)에 완료한다.
- 현지실사 검증
 답변자료상의 생산·판매·손익 등 피해 및 덤핑관련 자료를 현지방문을 통해 해당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회계장부 및 증빙과 대사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 공청회
 공청회 참가희망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 진술할 발언요지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공청회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이해관계인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라. 덤핑구제 조치

-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
 산업피해유무 판정은 무역위원회 위원의 의결로 결정되며, 산업피해긍정판정시에는 덤핑률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한다.

-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 및 공고(재정경제부)
 무역위원회의 예비(본)조사결과가 제출(접수)된 날부터 1월이내(필요시 20일내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조치하고 조치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 서면통지 한다.

3. 조사검토 사항

- 가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은 덤핑률조사팀에 의해서 덤핑수출

국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조사하여 덤핑률을 계산함으로써 확정된다.

$$\text{덤핑률} = \frac{\text{조정된 정상가격} - \text{조정된 덤핑가격}}{\text{과세가격(CIF)}} \times 100$$

- 조정된 정상가격 : 덤핑수출국에서 통상거래되는 정상가격을 공장도로 환원한 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덤핑수출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을 공장도로 환원한 가격
- 정상가격(normal value)의 산정
수출국내에서의 소비를 위한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가격을 사용한다.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 덤핑가격의 산정
수출자가 수입국내의 특수관계(현지법인)에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경우의 가격을 사용(수출가격) 한다.
수출가격이 없는 경우 즉,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최초로 독립된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현지법인 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을 사용 한다.
- ※ 미소(微少)기준(de minimis) : 덤핑차액이 2%미만인 최소허용 덤핑차액(dumping margin)이거나 최소허용 수입(negligible imports)

에 해당되면 조사를 종결한다.

나.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여부

1)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산업의 범위

조사대상물품의 덤핑률이 덤핑률조사팀에서 확인되면, 그 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그 범위를 검토·확정하여야 한다.
→ 덤핑물품은 조사개시결정, 덤핑률의 예비 및 최종판정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검토기준 】

- 덤핑물품과 동종물품 :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국내산업의 범위 :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 국내생산자중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내에 덤핑혐의물품을 상당량 수입한 실적이 있거나 덤핑혐의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경우에는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조사·판정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수입가격
 - 덤핑수입의 물량이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 덤핑수입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 초래 및 가격상승 억제 여부 (덤핑물품의 가격)
 -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덤핑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덤핑차액의 정도)
- 국내산업의 영향
 -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효과 포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3)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우려
 - 실질적 피해우려의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됨. 덤핑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 실질적 피해우려의 존재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 덤핑수입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4)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

- 국내산업이 생산설비를 설치 중에 있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영업개시를 한 경우,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생산설비의 설치에 차질이 생기거나 경영상 안정화를 지연시켰을 때 적용할 수 있다.
-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산업이 확립된 산업인지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인지를 판단한 다음,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실질적 지연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다.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 인과관계 분석방법론으로는 일원론적 방법(unitary approach)과 이원론적 방법(bifurcated

approach)이 있는데,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분석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자료를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추세분석(trend analysis)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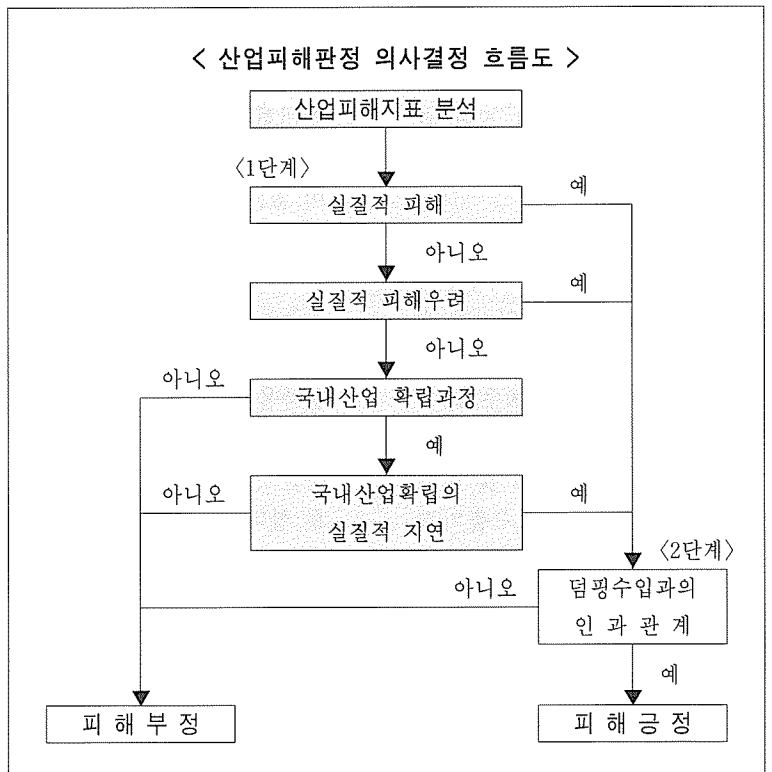
○ 인과관계분석 지표

- ① 덤핑수입물량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에 따른 영향
- ② 덤핑수입이 국내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 국내동종물품과 비교하여 저가판매의 유무와 덤핑수입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하락이나 가격인상을 억제하였는지의 여부

③ 덤핑수입이 국내생산자에 미친 영향 : 덤핑수입으로 국내생산자의 매출과 매출수익이 감소되었는지 여부

- 덤핑이외의 요인으로는 정상수입품의 물량과 가격, 수요 감소 및 소비패턴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간의 제한적인 무역관행과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환율·원자재 가격 등이 있다.

※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덤핑수입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분석 평가한다.



III. 반덤핑제도 활용방안

1. 반덤핑제도 준비

가. 조사신청 계획수립

- 반덤핑제도에 대한 이해(반덤핑 제도교육참가, 관련법규연구 등)
- 무역위원회 상담(초기 일반상담)
- 조사대상물품의 결정
- 국내 동종물품 · 국내 산업의 범위 결정
- 대표성기준 충족 검토

나. 정보 및 기초자료 수집

- 국제수급동향 및 국내총수요 파악
- 수입통계 및 수입품의 유통경로, 외국수출자, 수입자, 유통업자 파악
- 환율변동상황 파악 및 덤핑률 산출자료 수집
- 기술표준원 등 품질검사기관에 검사외의뢰
- 국내업체에 대한 자료수집 및 외국의 제소사례 파악
- 덤핑수입이외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

※ 자료원 : 국내외 전문잡지에 발표되는 통계 및 업계동, 신문·잡지 등 언론보내용 회사내 축적자료 및 해외지사만을 통한 정보수집, 수출입통계(관세청,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다. 전담팀 구성

- 기획 · 영업 · 회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 고문변호사 · 반덤핑전문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문
- 동종업계내 타회사와 공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환 : 신청동의여부 파악
- 경영층의 이해와 지원필요

라. 무역위원회 상담(구체상담)

- 신청서 초안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선임 등

마. 회사정책 조정

- 가격 및 판매정책 조정(필요한 경우)
-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 조절(수입이 있는 경우)
- 신규투자계획에 대한 영향 검토

바. 신청서접수후의 대응

- 신청서상 미비자료 보완
- 덤핑률 및 산업피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진술(구두 및 서면)
- 현지실사자료 준비 및 수검
- 이해관계인(수출자, 수출국정부, 수입자, 수요자)의 대응동향 파악 및 대응논리 개발
- 공청회 · 이해관계인 회의 참여

2. 각 단계별 제조업체의 대응방안

가. 제소여부 결정

- 신청자격
덤핑방직관세의 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업체들 또는 이들의 협회가 신청을 하고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사전에 무역위원회 담당조사관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한 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 수입물품 및 수출국가의 범위확정
조사대상물품 및 국가의 범위 확정시 되도록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확정조치 후 제소의 이익이 반감되거나 유사품목간 또는 국가간에 우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나. 대리인 선임

- 필요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임한다.

다. 자료 수집(덤핑판정의 요건)

- 1) 산업피해의 존재
 - 실질적인 피해
최근 3년간의 수입품의 물량 및 가격 추이와 이로 인한 국내 동종업체의 생산·출하·경영지표 등의 악화, 투자감소, 재고증가, 고용감소 등을 나타내는 피해지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피해자료 중 제소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통계와 국내시장통계 등이고, 기타 국내업체의 업체별 생산·출하·경영지표 등의 자료는 신청인들의 자료이므로 입수가 용이함. 다만, 제소대상물품에 대한 재무제표

- 등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피해우려 : 단기간 수입급증으로 인한 향후 피해우려
- 설립지연 : 덤핑물품과의 경쟁으로 인한 산업설립의 지연

2) 덤핑의 존재

- 수출국가내의 정상가격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가격이 낮으면 덤핑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덤핑사실이 발생한다.
- 외국의 자료에 대한 증거확보의 곤란
 - 내수가격 : 해당품목에 대한 공표된 가격자료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수거래에 따른 송장(invoice) · offer가격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KOTRA, 대기업 지사망, 대리인, market researcher 이용)
 - 對한국 수출가격 : 세번별(HSK) 관세청 수입통계 또는 수입면장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나, 동일 세번내에 여러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통계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3) 산업피해와 인과관계의 존재 : 수입물량 · 수입가격 등과 국내산업피해와의 논리적인 관련성 증명

라. 무역위원회에 제소신청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무역

위원회 담당조사관과 상담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을 이행한다.

마.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후 약 2개월 이내에 무역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답변서 제출

질문서내용은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답변서는 신청서내용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산업피해논리를 좀 더 개발하는 내용임. 신청서 작성시 간과하였거나 착오있는 부분은 답변서를 통하여 보완하며, 답변서는 추후 현지실사의 검증대상자료이다.

사. 의견서 제출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판정과

관련한 국내업체의 주장 등을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피해판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한다.

아. 현지실사 검증

예비판정후 무역위원회 실사 검증시, 제출한 답변자료가 회사 보관자료와 일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 공청회 준비 및 참가

수출자와 국내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므로 발언요지, 상대방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개발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이 되도록 한다.

차. 최종의견서 제출

주로 공청회에서 제기된 최종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 참고 】

■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 무역위원회 : 판정기능 담당
- 무역조사실 : 조사업무 담당

무역위원회 (위원 8인)

- 위원장(비상임) : 1인
- 위원 : 상임 1, 비상임 6

무역조사실

- 조사총괄과 (02-504-0106)
 - 법령 · 제도
- 산업피해조사과 (02-504-4814)
 - 산업피해 조사
- 가격조사과 (02-503-1866)
 - 덤핑률 조사
- 수출입조사과 (02-504-4819)
 - 세이프가드, 불공정수출입행위

○ 근거법률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 2001. 2. 3, 시행일 : 2001. 5. 4)